

교육공학과 대학원 내규 (2024. 11. 19 개정)

### 제 1 조(입학전형)

- ① (일반전형)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. 서류심사는 (1) 대학 및 대학원 성적, (2) 학업 및 연구계획서(학과 소정양식)로 한다. 구술시험은 (1) 전공에 대한 지식, (2)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으로 시행한다.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,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한다.
- ② (특별전형) 특별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, 특별전형의 특성상 (1)경력증명서, (2)추천서의 제출을 추가한다.
- ③ (편입학전형)편입학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게 시행한다.

### 제 2 조 (종합시험)

- ① (목적) 석사 및 박사과정은 학생은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학위논문 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② (응시자격) 전공 소정학점 2/3 이상 (석사과정 16학점, 박사과정 24학점)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갖는다.
- ③ (응시절차)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공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 (시험위원) 시험위원은 교육공학과 전임교수로 한다.
- ⑤ (문제 유형 및 배점) 문제는 서술형(논술형, 설명형, 사례형 등)으로 출제하며, 100점 만점으로 한다.
- ⑥ (합격점수)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평가한다. 불합격한 과목의 대상은 다음 학기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⑦ (시험결과 통지) 학과장은 종합시험 성적을 시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.
- ⑧ (보충규정)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 3 조 (프로포절)

-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원생은 학위논문 심사학기 6개월 전에 프로포절 작성 및 발표를 해야 한다.

### 제 4 조 (학위논문 심사자격)

- ①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원생은 학위논문 작성 전에 국내 등재지 또는 심사가 있는 외국 학회지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

본 학과 내규에서 정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본교 대학원의 내규를 따른다.